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3
----------	------

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7664호, 2005.8.4공포, 2006.

1.1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의2)

1)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7.4.13 ~ 2007.5.3)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소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를 “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종로구 소속”을 “구”로 하고, “교육부 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0조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중 “자녀 1인당”을 “학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u>	<u>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종로구</u> 소속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종로구</u> (이하 "구"라 한다)----- ----- ----- ----- -----.
제2조(기금구성) ① <u>서울특별시종로구</u>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3. (생 략) ② <u>구청장</u> 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기금구성) ① <u>구</u> ----- ----- ----- ----- 1.~ 3. (현행과 같음) ②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생 략) ②기금은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구청장</u> ----- ----- -----.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u>서울특별시중로구 소속 환경미화원</u> 및 그 자녀로서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u>교육부 장관</u> 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여 대상)----- <u>구</u> ----- ----- ----- <u>교육인적자원부장관</u> ----- -----.
제6조(대여제한대상) <u>다음 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5. (생략)	제6조(대여제한대상)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1.~5. (현행과 같음)
제7조(대여횟수 제한) <u>자녀 1인당</u>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7조(대여횟수 제한) <u>학자금</u> ----- ----- 1.~4.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u>다음 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1.~4. (현행과 같음)